

## 감 사 보 고 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대학교)의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대학교)의 재산 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3. 학교 관련				
4. 부속병원 관련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4년 5월   2  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 사 배 흥 기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 호)

감 사 이 성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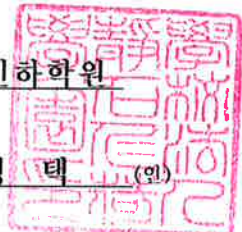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4 년 5 월 2 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 사 장 현 정택 (인)



피감사 기관장

년 월 일

                     대학교)

총(학) 장                      (인)

#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2023 회계연도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및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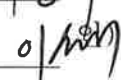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은 적절하며,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 배흥기 

감사 이성기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사무국장

성명 송광섭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법인 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별지 제1의1호 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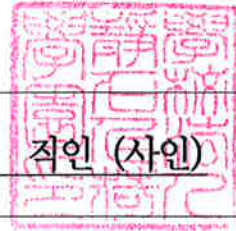
#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 년 3 월 1 일부터 2024 년 2 월 29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법인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 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p>	

피감사기관장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한정택



적인 (사인)

(법인 일반업무회계 · 수익사업회계)

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 監査報告書

2023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붙임

-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임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대학교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의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3. 학교 관련				
4. 부속병원 관련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인하 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 배홍기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 호)

감사 이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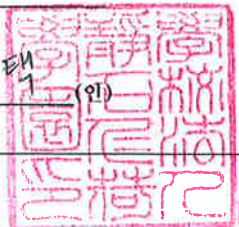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한정태 (인)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1일

인하 대학(교)

총(학)장 조명우 (인)



#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_\_\_\_\_인하 대학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_\_\_\_\_인하 대학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 사

배종기

배종기

감 사

이성기

이성기

피감사자(입회인)

직 명

사무처장

성 명

권영목

권영목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별지 제1의2호 서식)

## 인하 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 년 3 월 1 일부터 2024 년 2 월 29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	
피감사기관장 <u>인하 대학(교) 총(학)장 조명우</u> 직인 (사인)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監査報告書·表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지 제9호서식)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 監査報告書

2023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붙임

-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 하 대학교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한국항공대학교)의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한국항공대학교)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3. 학교 관련				
4. 부속병원 관련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한국항공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대한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 배홍기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 호)

감사 이성기 (인)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현정택 (인)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1일

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허희영 (인)

#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항공대학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한국항공대학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 배홍기

감사 이성기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사무처장

성명 최병권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교비회계·부속병원 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 한국항공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p>	
<p>피감사기관장 <u>한국항공대학교 총장 허희영</u> 직인 (사인)</p>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 監査報告書

2023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붙임

-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한국항공대학교

(별지 제1호 서식)

#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공업전문대학)의 2023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공업전문대학)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 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 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3. 학교 관련				
4. 부속병원 관련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인하공업전문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가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배종기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 호)

감사이성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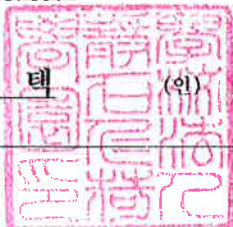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현정택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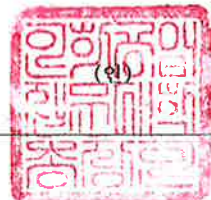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1일

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김성찬 (인)



# 감 사 보 고 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공업전문대학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인하공업전문대학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

배종기

감사

이성기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인하공업전문대학  
사무처장

성명

김광섭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교비회계·부속병원 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 인하공업전문대학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 년 3 월 1 일부터 2024 년 2 월 29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p>	
<p>피감사기관장 <u>인하공업전문대학 총장 김성찬</u> 직인 (사인)</p>	

(교비회계 · 부속병원회계)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 監査報告書

2023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붙임

-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임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공업전문대학



# 감사보고서

교육부 장관 귀하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회 귀중

사립학교법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제41조에 의하여,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의 2023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자,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다음의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의 재산상황·회계와 이사회의 운영 및 그 업무 처리는 관계 법령에 의거 적정하게(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내용 명시)처리하고 있음을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에 따라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 지적사항 내용

구분	재산·회계감사 지적사항		이사회 운영 및 업무감사 지적사항(건)	비고 <지적사항 없는 경우 : 지적사항 없음(표기)>
	건수	금액		
1. 법인 일반업무 관련				
2. 법인 수익사업 관련				
3. 학교 관련				
4. 부속병원 관련				
계				

- 붙임 : 1.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학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1호 서식)  
 2. 인하대학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별지 제1의2호 서식)  
 3. 사학기관채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 제41조에 의거 작성하는 내부 감사보고서

2024년 5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배종기 (인)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제 2050호)  
 이성이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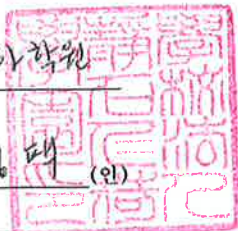
※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대학에 한하여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기재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한정태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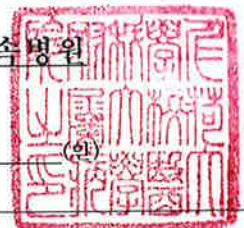


피감사 기관장

2024년 5월 2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

병원장 이택 (인)



# 감사보고서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이사장 귀하

우리는 사립학교법 제19조제4항 및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계산서·운영계산서 및 각 부속명세서를 감사하였습니다.

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는 일반적인 감사 기준을 준용하였습니다.

우리의 의견으로는(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별첨 재무제표는 사학기관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 규칙에 따라 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의 2024년 2월 29일 현재의 재무상태와 동일로 종료되는 회계연도의 자금수지 및 운영성과의 내용은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2024년 5월 21일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감사 이흥기  
감사 이성기

피감사자(입회인)

직명 감사실장  
성명 김아진

※ 반드시 자필서명 날인할 것


(교비회계·부속병원 회계)

(별지 제1의2호 서식)

## 인하대병원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계획

(회계연도 : 2023 년 3 월 1 일부터 2024년 2 월 29 일까지)

· 지적사항(내용) :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구분 표시

감사결과 지적사항(내용)	피감사기관장의 시정 조치계획
<p>(기술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붙임)</p>	
<p>피감사기관장 <u>인하대학교의과대학부속병원</u> 병원장 이택 </p>	

(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별지 제9호서식)

교육부장관 귀하  
학교법인 이사회 귀중

## 監査報告書

2023회계연도 ( 2023년 3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

붙임

- 법인 감사보고서(일반업무회계·수익사업회계)
- 대학교 감사보고서(교비회계·부속병원회계)

- 감사보고서(별지 제9호서식)의 피감사자(입회인) 서명  
날인은 법인 : 사무국장, 대학교 : 재무처장, 부속병원 :  
경리부장등 재정부처 책임자 또는 피감사기관장(법인:  
이사장·대학교:총장)으로 할 수 있음.
- 결산감사후 감사지적사항 및 시정계획(별지 제9호서식의  
1호)은 사학기관 감사업무처리 유의사항(대재 81423-232:  
2003.2.25) 별지 제1의1호 및 2호서식을 붙임으로 같음함.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

인하대학교부속병원